

단종보험대리점 도입방안

2012.12.20



목차

I. 검토배경

II. 신 판매채널 도입 필요성

III. 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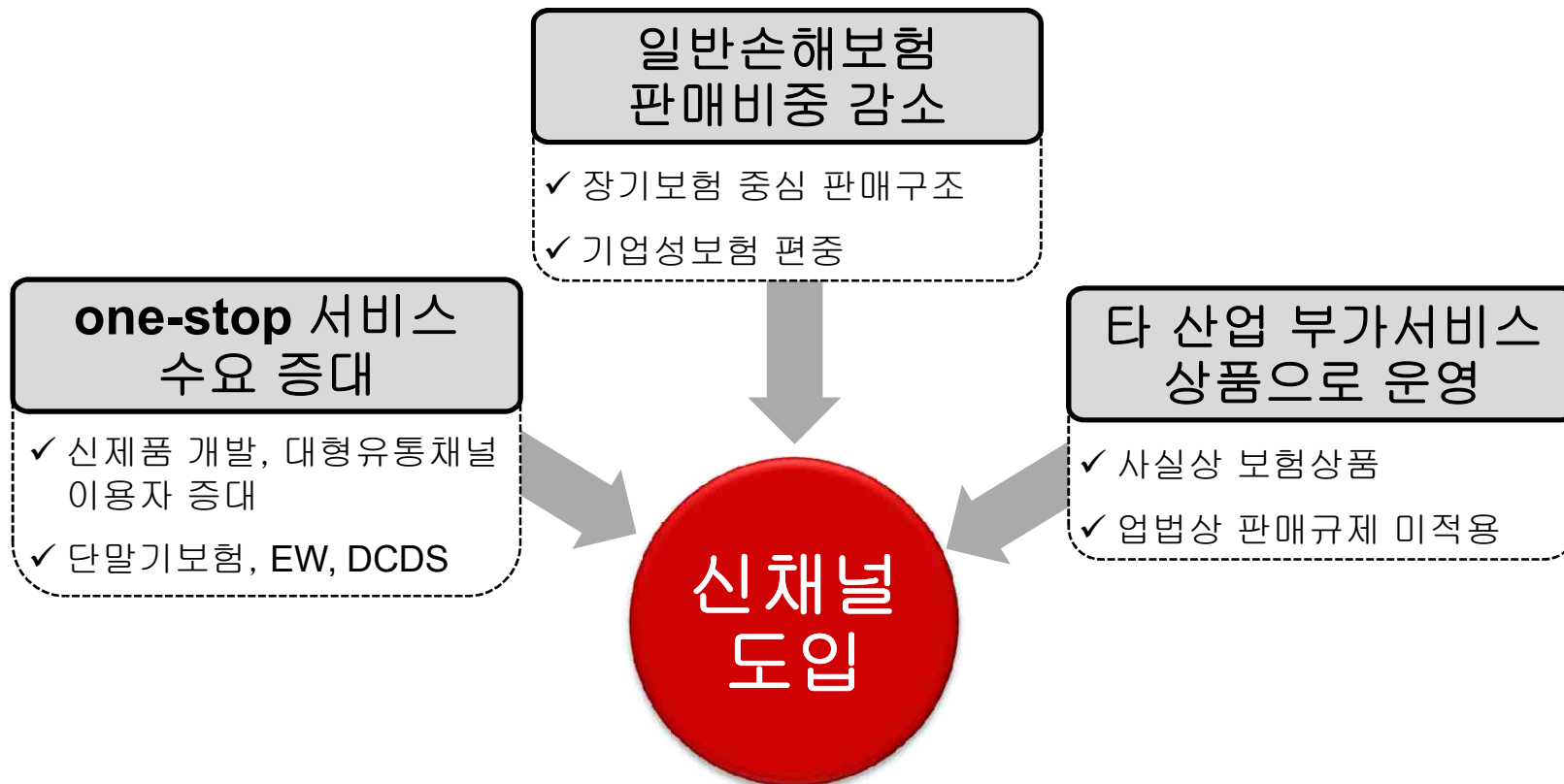
IV. 신 판매채널 도입방안



1. 검토배경

새로운 판매채널 도입방안 검토 필요

- 틈새 위험보장을 통한 일반손해보험 활성화
- 타 산업 위험보장서비스의 보험시장 편입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목차

I. 검토배경

II. 신 판매채널 도입 필요성

III. 해외사례

IV. 신 판매채널 도입방안



2. 신 판매채널 도입 필요성①

판매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 보험시장의 규제범위 재정립을 통해 판매의 책임성을 강화
- 캘리포니아 보험청은 자동차 연장보증서비스보험(EW) 판매업자에 대해 대리점 인가없는 보험판매행위는 불법으로 규정(2010.7)

제도권 내 정식 판매채널 미비

- 새로운 보험에 대한 가입수요 지속증가 추세이나 단체보험 형식으로 우회적 판매 (예: DCDS, 단말기보험, EW, 지급보증보험)
- 일부 단체보험의 경우 보상청구와 관련하여 소비자 이익 침해 가능성 상존

사실상의 보험판매

- 권역 경계선상에 있는 보험상품이 타 금융권의 부가서비스 상품으로 개발
- 이는 모집행위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해당

사례 1. DCDS 서비스

DCDS 서비스 관련 보험서비스 제공

- 카드사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카드회사가 회원에게 추가 수수료를 납부 받고 사고발생 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서비스(**2005년** 이후 운영)
- 카드회사는 손해보험사의 계약상 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동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험 헤지



- 카드사는 실질적 보험대리점 역할 → DCDS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 논란
- 소비자보호 방안 발표(2011.6)

사례 2. 단말기보험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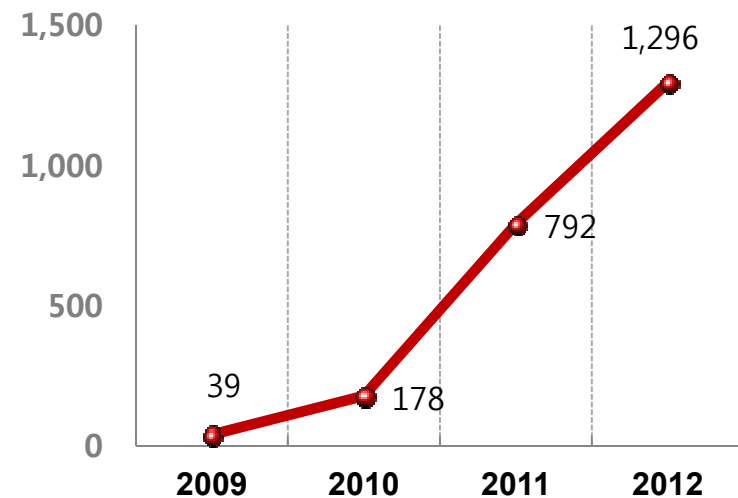
단말기 관련 보험서비스 제공

- 단말기보험: 파손, 분실, 도난으로 단말기에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전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단말기를 교체 및 수리해 주는 보험(2003년 도입)
- 운영체계의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불완전판매 및 민원 증가



- 통신사의 사실상 모집행위에 따른 보험업법 위반 가능성
- 판매규제는 보험사와 통신사 간에만 적용됨에 따라 민원 발생

민원 발생 추이



주: 2012년은 상반기임

2. 신 판매채널 도입 필요성②

보험소비자 후생 증진

- 보험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영국의 단종보험 판매채널인 Tesco, Sainsbury, ASDA 등의 성공요인은 낮은 판매수수료에 따른 저렴한 보험료 때문

저렴한 보험서비스

- 기존 채널 및 기존 상품에 비해 판매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판매서비스 제공
- 본업에 부수한 보험판매를 하는 부업대리점으로 전업대리점에 비해 낮은 판매수수료 책정 가능

보험가입 편의성

- 기업제휴형 판매채널로 기업이 별도의 대리점 인가를 받아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판매
-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one-stop**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

수요자 중심의 채널 활성화

- ‘적기(right time)’에 ‘꼭 필요한 보험상품(right coverage)’의 유기적 공급 가능

2. 신 판매채널 도입 필요성③

보험시장 영역 정립 및 성장 유도

- 건전한 보험산업 육성으로 본업인 일반보험 중심의 성장 유도
- 손해보험사의 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장기보험과의 균형발전 도모

보험시장 영역 정립

- 타 산업 부가서비스 상품을 보험시장 내에 편입 유도
- 건전한 보험산업 육성 및 산업 간 불필요한 이해상충 방지

신규채널 도입에 따른 판매 활성화

- 틈새위험 보장상품 개발에 따른 신규채널 도입으로 새로운 수익기반 마련
-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판매규제 개선

가계성 일반보험 활성화

- 장기보험과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복합적인 성장동력화 촉진
- 소비자에게 다양한 재물보험 제공 기반 마련

목차

- I. 검토배경
- II. 신 판매채널 도입 필요성
- III. 해외사례
- IV. 신 판매채널 도입방안



3. 해외사례: 미국①

미국의 단종보험대리점(Limited Licensed Agent) 제도

- 주(州) 보험규정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자 또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업자에게 해당 사업과 연관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보험판매 자격제도 운영
- 미국 내 19개 주에서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제도를 운영
- 단종보험대리점 인가서류
 - 독립보험대리점 신청서, 보험사의 확인서, 고용인 명단, 신청자의 확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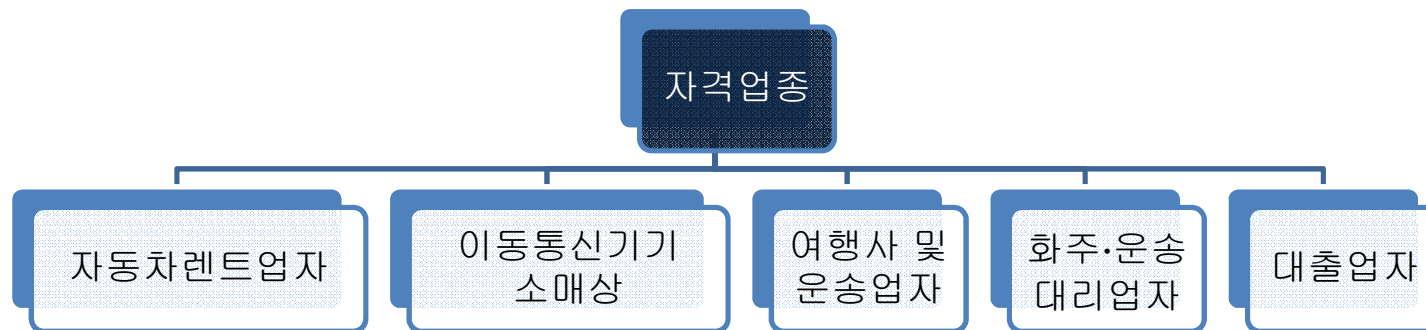
<단종보험대리점 인가서류>

인가서류	내용
신청서	독립보험대리점 신청서
확인서	독립보험대리점 신청자를 특정 보험상품의 대리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서명
고용인 명단	단종보험대리점 신청자의 고용인(보험판매자격 준용) 명단
확약서	직원의 보험판매 및 교육 준수

3. 해외사례: 미국②

미국의 단종보험대리점(Limited Licensed Agent) 제도

- 일반적으로 자동차렌트업자와 단말기대리점은 단종보험대리점 자격 가능
- 일부 주(州)에서는 여행사, 화주 및 해운회사의 대리업자, 대출업자 등에게도 자격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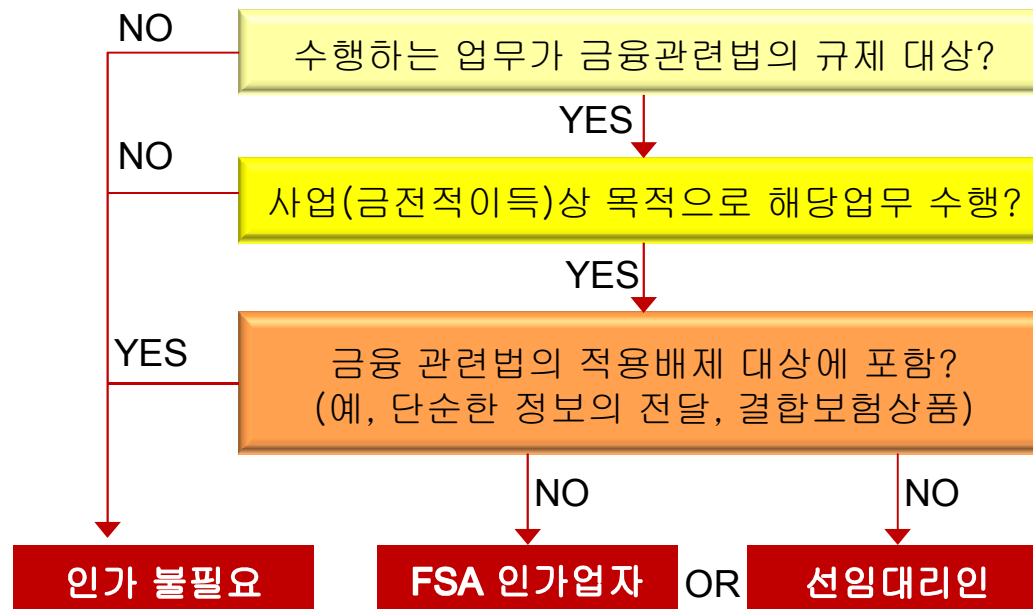
해당 주	판매되는 보험
캘리포니아	EW 판매업자, 여행자보험, 자동차렌트업, 무선통신단말기사업자, 프랜차이즈사업자
뉴욕	자동차렌트업, 무선통신단말기사업자, 프랜차이즈사업자
워싱턴	여행자보험
플로리다	여행자보험
델라웨어	자동차렌트업

3. 해외사례: 영국

영국의 선임대리인 제도

- 보험판매와 관련하여 과거 인가받지 않은 일부 손해보험 판매업자에 대해서 선임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조치하여(2005.1) 소비자보호 기반 강화
- 선임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 보험매개자(**insurance intermediary**)가 수행하는 보험매개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FSMA2000 Sec. 39(1)**)
 - 비투자성 보험상품의 단순한 소개에는 소개대리인(IAR)이 있음(예, 수의사) → 그러나 선임대리인과 등록요건은 동일(SUP 12.2.9G)

<선임대리인 결정 절차>



<선임대리인 관련 규제>

구분	일반 손해	순수 보장성	주택/ 투자성
계약 전 활동	✓	✓	✓
자문활동	✓	✓	✓
계약 관련	✓	✓	x
행정지원	✓	✓	x

참고. 손해보험 모집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근거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각 주 보험법	FSM, FSA Handbook
모집 자격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독립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 포함) •전속대리점 •중개사 •직급 •직판채널 •은행	•중개사 •기타회사대리점 •소매업체/제휴판매 •선임대리인 •직급 •은행 •주택조합
영업 범위	•설계사, 대리점: 당해 보험종목의 전체상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열거	•대리점, 중개사 등: 당해 보험종목의 전체상품 •단종대리점: 열거 (보험법상 단종대리점 규정 존재)	•대리점, 중개사 등: 당해 보험종목의 전체 상품 •선임대리인: 제한 없음

(계속)

참고. 손해보험 모집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등록 요건	연수과정(시험, 교육)이수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연수과정(시험, 교육) 이수 (단, 단종대리점: 시험면제, 일정시간 교육이수)	•대리점, 중개사 등: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자본요건, 전문 직업인배책가입 등 충족 •선임대리인: 대리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대리점으로 지정 후 FSA 등록
시험	주관기관 및 합격요건: 협회(설계사) 및 보험연수원(대리점) 주관 시험에서 60점 이상	뉴욕주: 인가보험종목 필기시험 합격 (단, 여행, 상해, 수하물보험, 운송업자 등은 시험면제 NY2103(f))	FSA 규정서(Training & Competence Sourcebook)상 시험규정 삭제('07.10.31)
교육 기준	20시간 이상(외부교육 5시간 이상)	•뉴욕주: 손보 40 시간 •캘리포니아주: 52 시간 (단, 가계성보험 대리점은 10시간)	별도의 시간 규정 없음 (업무에 상응한 능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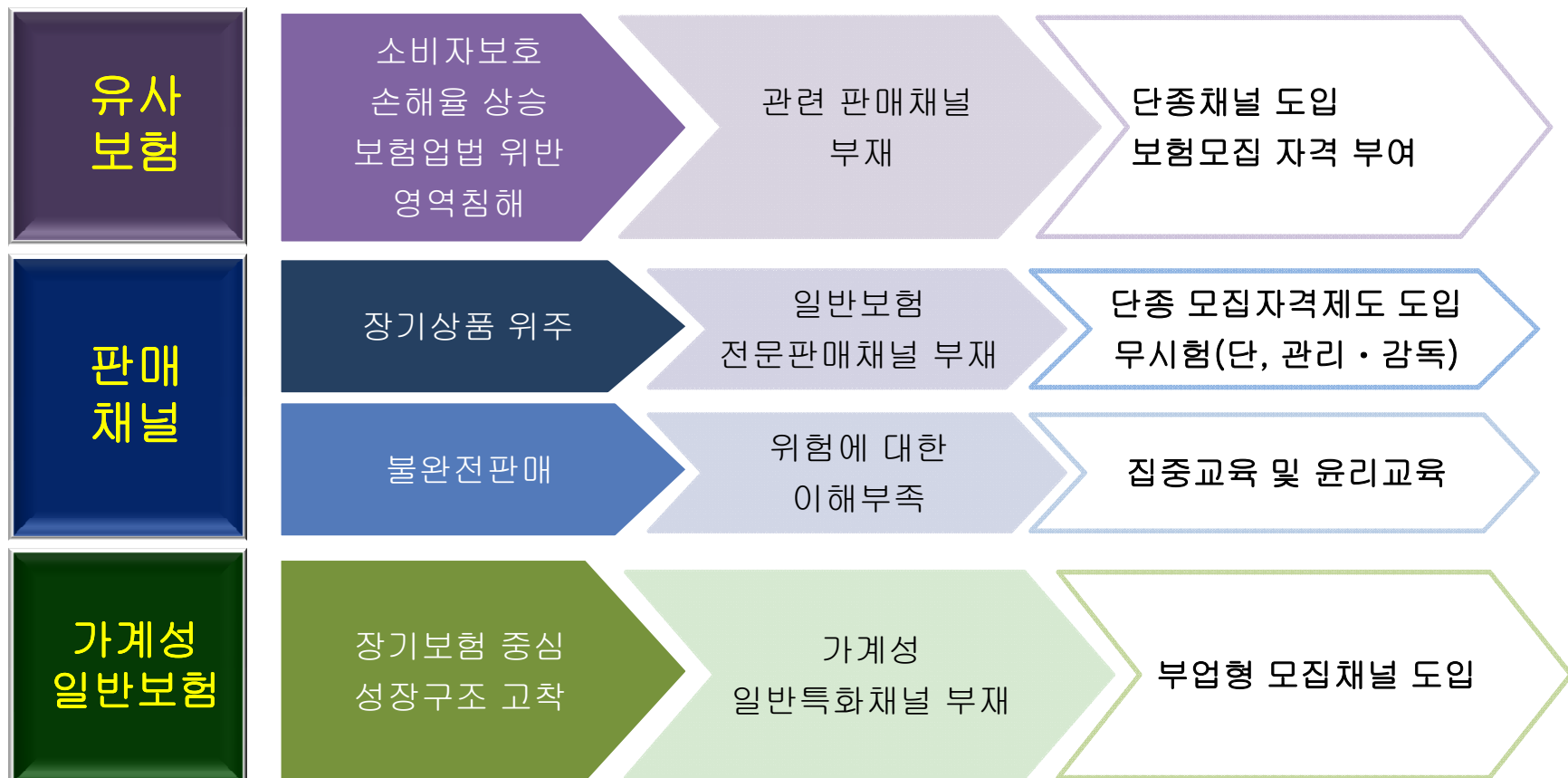
- I. 검토배경
- II. 신 판매채널 도입 필요성
- III. 해외사례
- IV. 신 판매채널 도입방안



4.1 신 판매채널 도입방안: 기본방향

완전판매, 전문성,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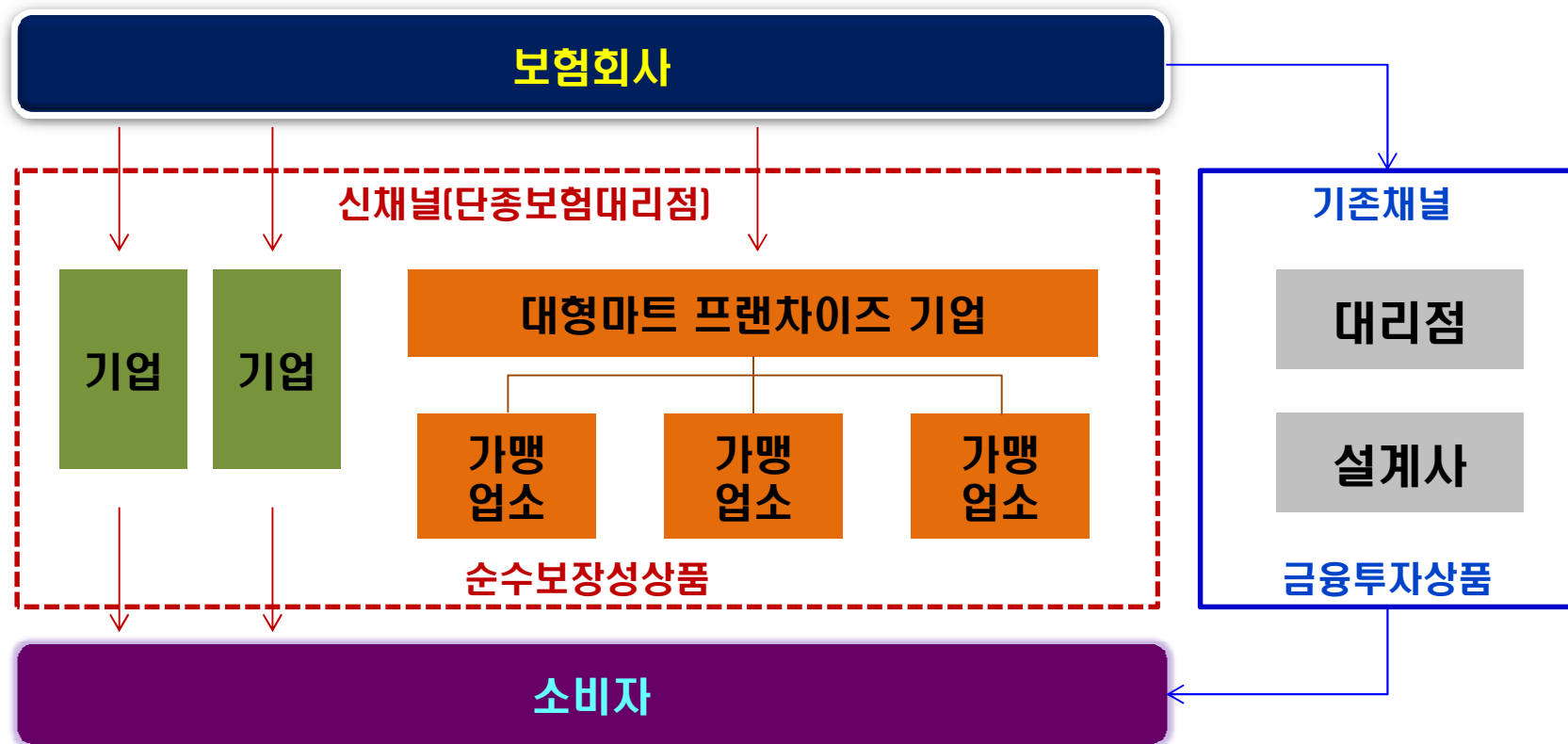
-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중심으로 등록요건 등을 완화한 단종 판매채널 신규 도입
- 판매행위규제는 타 채널과 동일 적용



참고. 신 판매채널 보험계약 방법 예시

순수보장성상품 판매 중심의 대리점계약 체결

- 기업과 단종보험대리점 계약체결, 소속 종업원(보험설계사)이 보험판매
- 프랜차이즈 기업과 단종보험대리점 계약체결, 해당 가맹업소가 보험판매



4.2 신 판매채널 도입방안①

본업과 연계한 특정 보험 판매채널 도입

- 시행령 개정으로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 규정을 신설
-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등 법적 논란을 방지

주요내용

- 특정 재화 또는 용역 등 판매자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대리점** 규정을 신설
- 단종보험대리점 자격을 부여받은 판매자가 고용인으로 하여금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단종 보험설계사** 규정을 신설

세부내용

- 현행 보험대리점(생명/손해/제3보험)에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본업으로 판매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있는 **보험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단종 손해보험대리점) 추가
- 현행 보험설계사(생명/손해/제3보험)에 §30②에 따른 **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손해보험설계사**(단종손해보험설계사) 추가

참고. 신 판매채널 보험종목 예시

채널구분	종목군	보험종목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업소)	배상책임 화재종합	•임차자배상책임 •동산종합보험 •가정종합보험 •부동산권리보험
판매점	특종종합	•골프보험
판매점	기타특종	•차량가액보장보험
대형마트 대형양판점	기타특종	•제품보증연장보험(EW)
아파트관리사무소	기타특종	•배상책임종합보험
예식장 웨딩업체	기타특종	•결혼보험, 건강보험
보석상	기타특종	•동산종합보험
애견샵 동물병원	기타특종	•동물보험

4.2 신 판매채널 도입방안②

단종 판매채널 등록요건 완화

- 시행령 근거 마련 후 감독규정에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세부사항 규정
- 기존 판매채널과 동일한 등록요건을 적용할 경우 단종 판매채널 활성화에 장애 가능성

주요내용

- (시험) 단종보험대리점·설계사의 모집자격 **시험을 면제 또는 완화**
- (교육) 전체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없으므로 **교육과목 및 시간 축소**

세부내용

- (시험) 본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상품의 이해 및 소비자 설명이 충분**하여 불완전판매 우려가 거의 없으므로 시험을 면제 또는 완화

★ 현행 (감독규정§4-3):

보험연수원(대리점), 협회(설계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교육과목) 교육과목 중 보험상품은 **본업과 연계된 상품**만 과목으로 하고, 보험모집 관련 **윤리교육**은 시행

★ 현행 교육과목: 보험모집관련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 손보상품 등

- (교육시간) 교육시간을 **8시간 이상(외부교육 2시간 이상)**으로 완화

★ 현행 교육시간: 20시간 이상(외부교육 5시간 이상)

4.2 신 판매채널 도입방안③

단종 모집채널 도입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상 특례적용

- 단종보험대리점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감독규정 개정
- 단종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신설 또는 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에 ‘본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를 추가(감독규정 §4-8 개정)
- 단종보험대리점이 감독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32 5호 단서 신설 또는 감독규정 §4-6 개정)

세부내용

- 단종보험대리점이 당해 본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모집질서 혼란 등 보험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에 추가
- 본업과 연계된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등록제한 예외규정을 시행령 신설 또는 감독규정 개정

- *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시행령 §32 5호)
- *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감독규정 §4-6)

4.2 신 판매채널 도입방안④

법인보험대리점 업무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

- 단종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조항 추가

주요내용

- 단종보험대리점에 대해서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 규정(보험업법 §87의3①)을 **배제**하는 특례조항 추가

세부내용

- 일반대리점에 대한 특별규정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법체계를 준용하여 보험업법 개정
- 법인보험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업무범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단종보험대리점에 대한 특례**규정을 추가(보험업법§92의2 추가)

★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를 제한(보험업법§87의3)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해서는 제87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3을 적용배제하는 특례조항(보험업법§92의2)이 있음

4.3 신 판매채널 도입방안: 경과조치

소비자보호 및 편익제고와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과조치

- 타 산업의 보상 등 부가서비스계약 상품판매는 보험업법 위반 소지
- 단종 판매채널화, 보험업법상 규제적용을 통해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

처리방안

- 유사보험의 경우 실정법상 보험업에 해당하여 **무허가 보험업 영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공표
 - * 재화 등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상(보험금)하기로 하고 수수료(보험료)를 수수한 것으로 실정법상 보험업에 해당(보험업법 §2)
- 보험업법 위반으로 해당 제조업자 등에 제재 및 판매중단보다 **단종판매채널화**
 - * 해당 업자에 고발 등 가능(보험업법 §200)

조치사항

- ‘신 판매채널 도입방안’ 발표 시 유사보험서비스는 무허가 보험업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
- 경과조치 마련 및 관련 조사 등을 통해 단종 판매채널로 전환 유도

감사합니다